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6
------	------

제출년월일 : 2005.

제 출 자 : 광 양



1. 제안이유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05.1.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기능·임기를 개정 법령에 맞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로 개정
-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
-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4조)

3.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재정수반사항 : 해당 없음

6.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05.3.9~3.15)

7. 조례규칙심의회 : 제6회(2005.3.16) 원안가결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를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보육 위원회”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중 “20인이내로”를 “15인 이내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중 “공무원이”를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로 하며,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중 “광양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

례」로 하고, 제정 조례 부칙 제2항중 “동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를 “「동광
양시보육위원회조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u>의 규정에 의거 <u>광양시 보육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u>영유아보육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u>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u>.....</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u>20인이내로</u> 구성한다. ② ~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u>15인</u> 이내로 .. 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p>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p> <p>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p> <p>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p> <p>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p> <p>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u>공무원이</u> 아닌 위원의 임기는 <u>3년으로 한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p>제4조(위원의 임기) 광양시 소속 <u>공무원이</u> 2년으로 하되, <u>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
------	-----

제출년월일 : 2005

제출자 : 광양



1. 제안 이유

- 「영유아보육법」이 2005.1.30일 개정 시행되어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선정 규정을 삭제하고
- 개정법령에 맞게 인용법령 조문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선정 규정 삭제 (안 제9조제4항)
-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 (안 제11조, 제24조)
- 시설장이 종사자 임면시 14일이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 (안 제14조)

3.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나목,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재정수반사항 : 해당 없음

6.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05.3.9 ~ 3.15)

7. 조례규칙심의회 : 제6회(2005.3.16) 원안 가결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로 한다.

제5조중 “취학아동”을 “취학전 아동”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모부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의 영유아

④가계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제8조제2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로, “모부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에”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설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을 제외한 일체의 경비는 수납할 수 없다.

제9조제1항중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를 “법 제24조제2항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유가 없는 경우” 뒤에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삽입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중 “보육위원회의결을”을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영유아보육법 제9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를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로 한다.

①공립보육시설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출사부, 그 밖에 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10일이내에 별표1에”를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로 한다.

제16조중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보육시간과 같다.”를 “「영유아보 육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에 의한다.”로 한다.

제18조중 “별표2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22조중 “별표3의”를 “별표2의”로 한다.

제24조중 “광양시보육위원회의”를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로 한다.

별표1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별표3을 별표2로 한다.

제12조중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 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u>	<u>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영유아보육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광양시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영유아보육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p> <p>.....</p> <p>.....</p> <p>.....</p>
<p>제5조(보육대상) 어린이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만6세미만의 취학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제5조(보육대상) <u>취학전 아동</u>.....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p>
<p>제6조(입소순위) 보육시설 영유아는 다음 입소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p> <p>①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p> <p>② <u>모부자복지법</u>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의 자녀</p> <p>③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p> <p>④ <u>입양아동 및 맞벌이, 결손가정의 자녀</u></p> <p>⑤ (생략)</p>	<p>제6조(입소순위)</p> <p>①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p> <p>② 「<u>모부자복지법</u>」</p> <p>③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u>」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의 영유아</p> <p>④ 가계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보육료) ① 보육료는 매년 정부의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p>	<p>제8조(보육료) ① 시설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할 수 있다.</p>

<p>②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u> 의한 수급자, <u>모부자복지법에</u> 의한 모부자가정 그리고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기타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p> <p>③ <u>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은 일체 수납하지 못하며 다만, 입소료 및 현장 학습비, 야간보육 급식비, 간식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광양시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 할 수 있다.</u></p>	<p>②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u>모부자복지법</u>」에</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을 제외한 일체의 경비는 수납할 수 없다.</p>
<p>제9조(위탁운영) ① 공립보육시설은 <u>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u>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의회 등 의뢰를 얻어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설정일> 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p>	<p>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24 조 제2항의</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p> <p>⑤ (생략)</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1조(약정의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u>보육위원회의결을</u> 거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11조(약정의 해지)</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3조(종사자구분 및 기준) ① 공립보육시</p>	<p>제13조(종사자구분 및 기준) ① 공립보육시</p>

<p>설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 등을 들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4조(종사자의 임면 및 보수) ①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며 종사자 임면시에는 10일이내에 「별표1」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6조(근무시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보육시간과 같다. 다만,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종사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18조(연가) ① 종사자의 근무시간별 연가 일수는 「별표2」와 같다.</p> <p>② (생략)</p> <p>제22조(특별휴가) ① 종사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4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① 시설장의 징계는 광양시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행한다.</p> <p>② (생략)</p>	<p>설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에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들 수 있다.</p> <p>②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p> <p>제14조(종사자의 임면 및 보수) ①</p> <p>.....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근무시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에 의한다.</p> <p>제18조(연가) ① 별표1과 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특별휴가) ① 별표2의 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①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② (현행과 같음)</p>
--	---

172 제1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현 행	개 정 안
<u>별표1</u> (생략)	<u>별지 서식</u> (현행과 같음)
<u>별표2</u> (생략)	<u>별표1</u> (현행과 같음)
<u>별표3</u> (생략)	<u>별표2</u> (현행과 같음)